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935

발의연월일: 2021. 6. 21.

발 의 자:어기구·김민철·이병훈

박상혁 • 허종식 • 김정호

주철현 • 이수진(비) • 이수진

김진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과수화상병,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, 병 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현재 병해충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(농경지 예찰·방제), 산림청(산림지 예찰·방제), 농림축산검역본부(국경지역 예찰)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, 기관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"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"이 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에 대하 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조의2(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
	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) ① 농
	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병해
	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
	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
	자정보시스템(이하 "국가식물
	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
	다)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
	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
	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	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
	<u>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</u>
	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
	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
	력하게 할 수 있다.
	③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
	스템의 구축・운영 등에 필요
	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
	로 정한다.